

온양 발리 신일해피트리 더 루츠 기관추천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의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청약신청일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리 44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6층 / 12개동 총 848세대 중 일반공급 2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총 19세대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주택형

구분	주택형	타입	주택형별 계약면적					일반분양 총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호수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포함)	합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059.9957A	59A	59.9957	21.0807	81.0764	33.4613	114.5377	19	1
	059.9734B	59B	59.9734	21.7857	81.7591	33.4488	115.2079	71	7
	074.5847A	74A	74.5847	25.0548	99.6395	41.5980	141.2375	25	2
	074.9026B	74B	74.9026	26.0082	100.9108	41.7753	142.6861	37	3
	084.9350A	84A	84.9350	28.1463	113.0813	47.3706	160.4519	33	3
	084.4955B	84B	84.4955	28.6027	113.0982	47.1255	160.2237	36	3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범위 내 공급

구분		59A		59B		74A		74B		84A		84B		배정세 대 소계	예비세 대 소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국가보훈처)	-	-	2	(6)	1	(3)	1	(3)	1	(3)		
	장기복무 재대군인	-	-	1	(3)	-	-	1	(3)	-	-	-	-	2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3)	-	-	-	-	1	(3)	-	-	2	6
	장애인	1	(3)	2	(6)	1	(3)	1	(3)	1	(3)	1	(3)	7	21
	중소기업 근로자	-	-	1	(3)	-	-	-	-	-	-	1	(3)	2	6
	계	1	(3)	7	(21)	2	(6)	3	(9)	3	(9)	3	(9)	19	57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 필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04.07. (목)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 (https://www.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com)
건본주택 오픈	2022.04.08. (금)	* 당사 건본주택 (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특별공급 접수	2022.04.18.(월)	* 인터넷 신청(www.applyhome.co.kr) (08:00~17:30) * 건본주택 신청 시(10:00~14:00) *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 (자격입증 서류 지참후 내방하여야 접수 가능함)
당첨자 동호회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2.04.26.(화)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당사 분양 홈페이지 (https://www.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com)
계약 체결	2022.05.09.(월)~ 2022.05.11.(수)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7:00

* 2022.04.18. (월) 청약홈(www.applyhome.co.kr)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진행 함.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홈페이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에서도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구분	내용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